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1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근거 마련(안 제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조합으로의 원활한 자금 유입을 위해 종전 재간접펀드*는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, 이와 유사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출자 근거 부재

* 현행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(제7조제2항제2호마목)에 따라 출자금 총액의 60% 이상을 다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개인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분산 투자 자율성 제고 및 개인투자조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2. '초기창업자' 명칭을 '초기창업기업'으로 변경(안 제12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(법률 제18861호, '21.12.28., 전부개정)에 따라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'초기창업자' 명칭이 '초기창업기업'으로 일괄 변경되었으나,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은 미반영

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(정의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'초기창업자' 명칭을 '초기창업기업'으로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 미비사항 정비로 법령수요자의 이해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3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,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 (안 제24조, 별지 제11호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395호, '23.4.18., 일부개정)에 따라 신규 도입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 구체화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시 결성계획서 내용 및 제출 의무를 종전(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)과 동일하게 명시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 후의 등록신청서 내용 및 제출 의무를 종전(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)과 동일하게 명시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종전(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)과 동일하게 명시
-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[별지 제11호서식]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포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사무 등에 대한 법령수요자의 이해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4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범위 명시(안 제24조제9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민간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(법 제63조의2제3항 후단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범위의 구체화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범위로서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명시 (법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 기준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 자금 유입 확대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